



교육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 요구 금지 요청

1.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조 요청사항(2022.4.6.)
2. 오미크론 우세종화 이후 방역정책 전환, 지자체 업무 부담 완화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이 3월 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3. 다만, 코로나 19 확진 및 격리해제 후 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을 증명받고자 요청하는 자에게 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4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서식	신 서식
명칭	격리해제 확인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대상	모든 격리해제자 (국내/국외 사용)	출국 예정 기확진자 (국외 사용만 가능)
주요 내용	-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격리해제자는전파의 우려가 없으며,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음” 내용 포함	- 확진검사일 및 격리해제일 정보 제공 - “확진자의 격리해제 사실을 확인함” 내용 포함

4. 이와 관련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출국용으로 국내 기관에서는 '격리해제 확인서'와 같은 양식을 제출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서식) 1부. 끝.

교육부장



각실과, 고등교육기관전체, 소속기관, 소속단체, 시도교육청, 고등외국교육기관

행정사무관 **김은미** 학생건강정책과장 전결 2022.4.6. **정희권**

협조자

시행 학생건강정책과-2960 ((2022.4.6.)) 접수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 www.moe.go.kr
교육부
전화 044-203-6961 전송 044-203 / miya98@korea.kr / 공개